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일자리청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72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2. 제안이유

청년미래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,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4조)
- 나. 인용조문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(안 제17조)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설치·운영중인 청년미래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(2028년 12월 31일까지)하고,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